

제2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4. 10.

임실군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및 객실운영, 위약금 처리 신설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객실운영 신설(안 제5조의2)
- 나. 예약 등 신설(안 제5조의3)
- 다. 입장시간 등 신설(안 제6조의2)
- 라. 위약금 처리 신설(안 제6조의3)
- 마. 입장료 등의 면제 정비(안 제8조)
- 바. 입장제한 삭제(안 제9조)
- 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안 별표)
- 아.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20조)
- 자. 용어 및 오탈자 정비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비규제)

마.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5.03.06~2015.03.27)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6)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산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산림법」 제32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제3조 중 “세심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중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시설사용료 수”를 “시설사용료 징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성수기 및 주말 :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제5조 중 “세심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객실운영) 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성별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실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10을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3(예약 등) 휴양림 시설 이용의 예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30% 할인
2.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100% 할인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입장시간 등) 휴양림 입장시간과 별표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2:00까지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12:00까지
3. 편의시설중 정자,평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제6조의3(위약금 처리) ① 예약자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② 예약금 환급은 사유발생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의 환급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입장료에 한정함)
2. 산림업무 공무원이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실군수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숲해설가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이 이용하는 경우(입장료 및 주차료에 한정함)
7. 관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양림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입장료에 한정함)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본문 중 “세심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연휴양림”을 각각 “휴양림”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한다.

제18조 중 “자연휴양림운영”을 “휴양림운영”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  
다.

제23조 중 “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세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 1.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그린카드 소지자	비 고
개 인	1,000	700	500	무료	
단 체	700	500	300		※단체 : 30인 이상

###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주 차 장	승용차, 15인승이하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3,000	1일 1대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초과 화물차	5,000	"
산 막	16.0~18.0㎡	40,000	1일 1실
	19.0~21.0㎡	45,000	"
	22.0~24.0㎡	50,000	"
	25.0~27.0㎡	55,000	"
	28.0~30.0㎡	60,000	"
	31.0~35.0㎡	70,000	"
	36.0~40.0㎡	80,000	"
	41.0~46.0㎡	90,000	"
	47.0~55.0㎡	100,000	"
	56.0~65.0㎡	120,000	"
66.0~75.0㎡	150,000	"	
휴 양 관	40.0~50.0㎡	70,000	"
정 자	팔각정(3개)	20,000	1일 1개소
	사각정(1개)	30,000	"
평 상	2.5m×2.5m	10,000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산림법 제31조의</u>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가 조성한 “세심자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u>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u>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u>산림법</u>」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u>자연휴양림</u>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세심자연휴양림</u>에 한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보호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시설사용료 : <u>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u> 규</p>	<p>제1조(목적)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u> ----- ----- -----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u>----- ----- ----- ----- ----- -----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u>---자연휴양림----- ----- -----.</p> <p>제3조(적용범위) ----- <u>휴양림</u>----- ----- ----- ----- ----- ----- -----.</p> <p>제4조(용어의 정의)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u></p>



<신 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 임실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10을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3(예약 등) 휴양림 시설 이용의 예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30% 할인
2.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100% 할인

제6조의2(입장시간 등) 휴양림 입장시간과 별표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2:00까지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12:00까지
3. 편의시설중 정자,평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신 설>

제8조(입장료 면제)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및 휴양림지역을 통과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산하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위약금 처리)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② 예약금 환급은 사유발생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의 환급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입장료에 한정함)
2. 산림업무 공무원이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실군수가 산림교육, 문화행

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  
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  
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숲해설가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5. 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  
한 경우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  
승한 차량이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에 한정함)

7. 관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  
기 위하여 휴양림 구역을 통  
과하는 경우(입장료에 한정  
함)

<삭 제>

제9조(입장제한) 휴양림관리·운  
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의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  
세 이하의 어린이

3. 동물을 동반한 자

4.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세입조치) 세심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임실군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시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자연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조성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자연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관리비) 수탁자는 자연휴양림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비,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와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휴양림-----  
-----  
-----.

제15조(위탁운영) ① 휴양림-----  
-----  
-----.

② 휴양림-----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  
----- 휴양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비) ----- 휴양림운영-----  
-----  
-----  
-----  
-----.

제20조(수탁자 자격)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3조(재산보호) 수탁자는 자연  
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  
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 자격) -----  
-----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재산보호) -----휴양  
림-----  
-----  
-----  
-----.

[별표개정]

## 세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 1.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 군 인	어린이	그린카드 소지자	비 고
현 행	개인	1,000	700	500		
	단체	700	500	300		※단체:30인 이상
개정안	개인	1,000	700	500	무료	
	단체	700	500	300		※단체:30인 이상

###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사 용 료		비 고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주차장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00	3,000	1일 1대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5,000	5,000	"
산 막	5평형	16.0~18.0m <sup>2</sup>	20,000	40,000	1일 1실
	6평형	19.0~21.0m <sup>2</sup>	30,000	45,000	"
	7평형	22.0~24.0m <sup>2</sup>	40,000	50,000	"
	8평형이상	25.0~27.0m <sup>2</sup>	50,000	55,000	"
		28.0~30.0m <sup>2</sup>		60,000	"
		31.0~35.0m <sup>2</sup>		70,000	"
		36.0~40.0m <sup>2</sup>		80,000	"
		41.0~46.0m <sup>2</sup>		90,000	"
		47.0~55.0m <sup>2</sup>		100,000	"
		56.0~65.0m <sup>2</sup>		120,000	"
	66.0~75.0m <sup>2</sup>		150,000	"	
휴양관	1실:15인기준	40.0~50.0m <sup>2</sup>	50,000	70,000	"
정 자		팔각정(3개)	0	20,000	1일 1개소
		사각정(1개)	0	30,000	"
평 상	공 통	2.5m×2.5m	3,000	10,000	"
캠프화이어장			20,000	삭제	시설없음

##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작성자

축산치즈산림과장 최 정 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A 전북임실010		
정책명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축산치즈산림과	
	담당자명	박동민	전화번호 063-640-2475
주요 분석평가 내용 (축산치즈산림과)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제5조의2(객실운영)의 2항에 예비객실 이용현황을 기록보관시 성별분리 통계를 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축산치즈산림과)	이용현황 기록시 성별구분을 명시토록 반영하겠음.		
<p>2015년 03월 30일</p> <p><b>축산치즈산림과장</b></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 관련법령 발췌문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7.>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1.26., 2014.12.3.>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2014.12.3.>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9.17.>

※ 그린카드 : 국민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입 등 녹색생활 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하여 친환경생활 정착 도모